

●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1624호

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,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,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

- 전자우편 : [kdj7788@korea.kr](mailto:kdj7788@korea.kr)

- 팩스 : 044-201-5581

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(전화 (044) 201 - 4759, 팩스 (044) 201- 558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